

공 고

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26-739호

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(수정)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 11. 18.)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44호(2012.6.7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704호(2025. 12. 11.)로 재정비촉진지구(변경)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결정된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, 사업시행자인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신청서가 제출되어, 동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,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, 관계서류에 대해 공람을 실시합니다.
2. 본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, 조합원 또는 그 밖의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5월 6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1. 공람기간 : 2026. 5. 6. ~ 2026. 5. 20.
2. 공람장소 : 서대문구청 제3별관 7층 도심개발과 (☎330-1654)
3. 공람내용
 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 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위 치 :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80번지 일대
 - 구역면적 : 78,923.0㎡
 - 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명 칭 :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: 고영대)
 - 주 소 : 서울시 서대문구 응암로 87(북가좌동) 삼진빌딩 4층
 - 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 - 마. 구역지정일 : 2012년 6월 7일
 - 바. 사업시행인가 내용
 - 지하4/지상40층 13개동 1,430세대(임대199세대 포함), 연면적266,285.597㎡

4. 관계서류(생략) :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

5. 의견제출처 : 서대문구청 제3별관 7층 도심개발과 (☎330-1654)

6. 수정사항 : 「토지보상법」 제21조 조항 기입

※ 사업시행계획 및 건축계획은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, 기타 세부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. 끝.